

[별표1]

지원 대상의 범위(제3조)

1.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을 충족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상 학교
2.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나 제1호에 따른 학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RISE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지원 대상으로 정한 각 목의 기관 또는 학교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
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
 - 라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
 - 마. 「평생교육법」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
 - 바.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
 - 사.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
 - 아.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

「농수산대학교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, 「전통문화대학교법」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」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,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,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,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,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제3사관학교, 「외국교육기관법」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

- 자. 개별 법률에 따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기관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기업법」 등